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2. 기준일 : 2018.5.2

3. 효력발생일 : 2018.5.31

4. 주요 정정사유

- ①부책임운용역 삭제(이준현)
- ②기준일자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- ③신고서내 판매보수 중복기재 삭제

5. 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보수	업데이트	-	-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 투자전략	부책임운용역 삭제(이준현)	부책임운용역 : 이준현	<삭제>
3. 운용전문인력			
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업데이트	-	-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부책임운용역 삭제(이준현) 및 업데이트	부책임운용역 : 이준현	<삭제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신고서내 판매보수 중복기재 삭제	<정정전1>	<정정후1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수익률변동성 변경	0.44%	0.40%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	신고서내 판매보수 중복기재 삭제	<정정전1>	<정정후1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-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			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-

6. 간이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보수	업데이트	-	-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부책임용역 삭제(이준현) 업데이트	부책임용역 : 이준현 -	<삭제> -

7. 집합투자규약 : 해당사항 없음

<정정전1>

종류별	가 입 자 격	판매보수
Class A	제한없음	연 0.398%
Class A-e	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	연 0.199%
Class A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	연 0.2985%
Class B	제한없음 (선취판매수수료 부과)	연 0.200%
Class B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	연 0.15%
Class I	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.	연 0.000%
Class C-I	건별 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	연 0.020%
Class C-W	가.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	연 0.000%

	다.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라.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	
Class C-P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	연 0.160%
Class C-P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 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	연 0.080%
Class 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연 0.150%
Class C-P1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	연 0.279%
Class C-P1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자매체(온라 인) 전용 수익증권	연 0.1395%
Class S-P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 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	연 0.0837%

<정정후1>

종류별	가 입 자 격
Class A	제한없음
Class A-e	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
Class A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 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 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
Class B	제한없음 (선취판매수수료 부과)
Class B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
Class I	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.
Class C-I	건별 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
Class C-W	가.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 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다.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라.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
Class C-P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Class C-P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

	익증권
Class 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
Class C-P1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Class C-P1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
Class S-P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